

대구지방법원

제 8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나306180 주식매매계약 효력 부존재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순도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가단137853 판결
변론종결	2024. 2. 28.
판결선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2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서 원고 청구

의 기각만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하므로 피고의 항소취지에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작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 등 사이의 업무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회사의 총 발행주식 160,000주(이하 ‘소외회사 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하고 있던 중, 소외회사 주식의 상장(IPO 또는 SPAC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20. 12. 10. D 및 N, M과 별지1 기재와 같은 업무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서’라고 하고 이로 인한 계약을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D은 이 사건 업무계약서에 당사자로 ‘M, N 외 1인’으로만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2) D은 2021. 1. 15. N, M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외회사의 투자유치업무의 진행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업무계약서상 N 및 M의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2020. 12. 15.자로 소급하여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N, M은 이 사건 권리를 AC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D 등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21. 1. 22. D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유한 소외회사 주식 중 보통주 28,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계약일 2020. 11. 10. 총인수가액 142,000,000원, 주식양수양도일 2020. 12.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로 인한 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소외회사 주식 중 보통주 10,000주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N, M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 중 보통주 각 4,800주를 N와 M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업무계약 해제통보

- 1) 원고는 2021. 2. 8. M, N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전부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2) M, N는 '이 사건 권리양도를 2021. 2. 7.자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통보서를 작성하여 2021. 2. 9. D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
- 3) 원고는 2021. 2. 9. D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진행하던 일들을 현재에서 다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 4) 이에 D은 2021.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1. 2021. 1. 20. 원고는 서울 미팅 후 D과 이야기한 스펙상장에 대한 내용 중 2020. 12. 15. 작성한 업무협약서 기준으로 D이 소외회사의 지분 60%, 원고가 40%를 가지고 있어 스펙상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원고가 70%, D 30%를 가져서 M과 N에게 각 3%씩 분배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21. 1. 22. 계약을 소급 적용하여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이 귀하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주식대금을 지불하려 하오니 은행 계좌 주시면 송금할테니 명의개서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 5) 소외회사는 2021. 3. 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소외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를 D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 내지 16, 21(을 제1호증과 동일),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계약에 종속된 계약 또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원고를 상대로 D 명의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0438호 주식인도 청구 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D의 처인 피고로서는 D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D이 관련소송에서 D 명의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한 주장과 동일

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여부를 다투고 있고, 관련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상이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업무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업무계약의 법적 성격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계약서에 ‘공동사업자, 지분확인, 수익분배’ 등 동업에 관련한 표현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참조), 이 사건 업무계약에는 ‘소외회사 주식의 상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으나 공동 경영할 특정한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업무계약서 제2조가 ‘소외회사의 주식 60%의 범위 내에서 M, N외 1인(D)이 IPO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용과 제반 경비, 주권할당을 포함시키고 이는 3인의 협의에 의해 적시적소에 자율관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구의 내용상 이는 D 등이 위임 업무를 함에 필요한 비용 및 보수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N는 ‘이 사건 업무계약 제2조의 60% 중 51%는 증권사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대주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D, M, N의 상근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계약은 원고가 D 등에게 소외회사 주식의 상장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D 등에게 그 비용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업무계약의 해지 여부

가) 이 사건 업무계약은 위임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을 임의해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21. 2. 9. D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업무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업무계약이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계약서 제7조(특약사항) 제3항에 ‘2023년 IPO, SPAC 상장으로 가지 못할 시 위 약정은 해지됨에 쌍방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D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사항에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은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원고와 D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계약서 제8조(기타사항) 제2항에서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업무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이 ‘계약의 해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업무계약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상장업무의 편의 및 D에 대한 보수액 변경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 수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업무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업무계약의 종된 계약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라 할 것이다.

① D이 작성한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업무계약서 기준으로 D이 60%, 원고가 40%를 가지고 있어서 스펙상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원고가 70%, D이 30% 가져가서 M과 N에게 각 3%씩 분배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D도 이 사건 업무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주식분배비율의 변경을 함으로써 SPAC 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D은 대구고등법원 2022노48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2023. 4.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업무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었으며 C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C를 성장시켜 상장시키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N는 관련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IPO로 추진하다가 SPAC상장으로 변경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IPO 추진할 때에는 4대6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SPAC 상장으로 상장방식이 바뀌면서 7대3으로 주식지분을 변경하였다. 자금유치부터 SPAC 상장을 다했을 때 지분을 넘긴다. D은 C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C가 직접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았기 때문에 D의 자금조달과 상장 시 비용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C의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주식의 무상양도가 아니라 유상양도계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업무계약 또는 업무계약에 포함된 수익분배약정과는 무관하고 독립된 별도의 쌍무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D 및 N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D의 업무에 대한 대가(조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i) ‘이 사건 주식은 현재 주당 20만 원에 거래 된다’는 위 N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는 D의 매수대금인 액면가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과 실제 가치와의 차액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이 사건 업무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된 계약이

자 해제조건부 계약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업무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준물권행위인 주식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식양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인 때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동시에 즉시 그 행위 이전의 권리의 원래 상태로 당연히 복귀하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참조), 게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는 D에 대한 보수지급의 성격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주주권 부여 및 비율조정을 통하여 주식상장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계약이 해지된 이상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피고에게 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별 지

별지1

업무 계약서

IPO, SPAC 상장을 위한 공동사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의
1인(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간" 또는 "이"에 의해 제공되는 [] (이하 "회사"라고 함)에 대한 IPO, SPAC 상장이나 기타 다른 모든 형태의 공적 거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적 거래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제 2 조 【지분확인】

당사자 범용은 IPO, SPAC 상장으로 가기 위한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구성이 "갑"의 최종 절대적 지분은 40%±5%(40%의 지분율을 100% 계산한 백분율에서 5%는 가감될 수 있다)이며, 나머지 지 60%에 대하여는 [], []와 1명이 IPO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용과 제반 경비 주권 할당 을 포함 시키고 이는 3인의 합의에 의해 즉시 적소에 자금을 전환 한다.

제 3 조 【심판부】

1. 당사자 쌍방은, "본인"을 자택 가문대 차고문으로 가문대 안(前庭)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본인"이 차고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 4 조 【수익분배】

당사자 합병은 IPO, SPAC 상장으로 가기 전 근무에 대하여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와 []의 1인은 60% 비율속에서 각자 수익을 분배한다.

附 5 조 【 思想胡漢 】

1. 이 조항은 본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조항은 본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조 【책약사항】

상기 제와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필수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illegible]

- 여야 한다.
2. IPO, SPAC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비용은 우선 "갑"이 출당 후 투자금에서 정산 한다.
 3. 2023년 IPO, SPAC 상장으로 가지 못할 시 위 약정은 형지 외에 "갑""을" 상 방 일체의 이익을 제기 하지 않는다.

제 8 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에 의거 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이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 의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면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계약일자 : 2020년 12월 10일

(갑) 주 소 : 대구시 북구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연 락 처 :

(을1) 주 소 : 남원주시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을2) 주 소 : 대구 수성구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연 락 처 :

별지2

주식 매매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 [] 외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매매대상 및 매매대금)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주식발행회사 :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
- 총주식수 160,000주/인수 주식수: 보통주 28,400주
- 총인수 가격: 142,000,000원정
- 주식양수도일: 2020 년 12 월 10 일

제 3 조 (매매대금의 지급)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해당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과 상환으로 2020년 12월10일까지 갑에게 일시 지급한다.(단,주식대금지급이 2020년 12월 10일까지 지급이 안될 경우에도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며 2020년 법인세신고기한 이전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주주권의 귀속)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계약 즉시 주식발행회사의 명의개서를 완료 하도록 하며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기타)
매수인은 제2조 매매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주식과 관련한 본 계약상의 권리는 해당 제3자가 직접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의무는 매수인과 해당 제3자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기타 본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갑"과 "을"은 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위 계약에 "갑"과 "을"은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11 월 10 일

매도자(갑)
주 소 : 대구시 북구 [] 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성명 : []

매수인(을)
주 소 : 하남시 [] 아파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성명 : []